

# 排出 賦課金 制度 (IV)

鄭 國 鉉  
(環境庁 振興協力課長)

## 4. 賦課金 算定方法 및 基準

排出賦課金 算定公式는 “汚染物質 1 kg當 賦課金額×排出許容基準超過汚染物質排出量×排出許容基準超過率別 賦課係數×地域別 賦課係數×年度別 賦課金 算定指數”이다.

위의 算定公式에서 地域別 賦課係數는 大氣 및 惡臭汚染物質일 경우, 排出業所가 I 地域에 所在할 때 그 賦課係數는 2이며 II 地域일 때에는 1, III 地域일 때에는 1.5이다.

여기서 I 地域이라함은 國土利用管理法 第 6條의 規定에 의한 취락지역, 都市計劃法 第 17條의 規定에 의한 住居地域 및 商業地域을 말하며, II 地域이란 國土利用管理法 第 6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地域, 水産資源保全地域, 開發促進地域, 留保地域과 都市計劃法 第 17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地域을 말하며 III 地域이란 國土利用管理法 第 6條의 規定에 의한 耕地地域, 山林保全地域, 自然環境保全地域, 觀光休養地域, 都市計劃法 第 17條의 規定에 의한 綠地地域을 말한다.

水質汚染物質일 경우 3가지 지역 즉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다” 및 “특례”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지역지정은 排出許容基準(廢水) 適用을 위하여 環境廳長이 지정하며 地域別 賦課係數는 “청정” 및 “가”지역이 2, “나”지역이 1.5, “다” 및 “특례”지역이 1이나 “나” 및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現在 없는 실정이다.

環境廳에서는 1983年 9月 7日에 全國의 邑, 面, 洞을 單位로 하여 “청정” 지역, “가”지역, “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청정”지역이란 水質을 絶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水域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環境廳長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가”지역이란 環境基準(水質) I 等級 정도(B.O.D : 1 이하)로 水質을 保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水域의 水質에 영

향을 미치는 지역, “나”지역이란 環境基準 II 等級(B.O.D:3 이하) 또는 III 等級(B.O.D: 6 이하) 정도로 水質을 保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水域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다”지역이란 環境基準 IV 等級(B.O.D: 8 이하) 정도로 水質을 保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水域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례”지역이란 環境基準 V 等級 (B.O. D : 10 이하) 정도로 水質을 保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水域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各各 環境廳長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廢水의 경우 排出許容基準은 地域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바, B.O.D 및 부유물질의 경우 “청정”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은 50 이하이며 “가”지역에서는 100 이하, “나”지역에서는 150 이하, “다”지역에서는 200 이하, “특례”지역에서는 300 이하이다.

따라서 같은 농도의 汚染物質을 배출할 경우에도 그 지역에 따라 賦課金額이 크게 달라진다. 즉 “청정”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는 “나”지역에 위치한 業所에 비해 3배 이상의 賦課金을 부담하게 된다.

끝으로 惡臭濃度別 賦課係數는 惡臭濃도가 3 이상 4 미만일 경우 1이고 4 이상 5 미만일 경우 1.25이며 5 이상일 경우 1.5이다.

惡臭는 官能法에 의해 測定하는바 이 시험법은 惡臭가 발생하는 현장(공장)의 부지경계선상(피해지점)에서 건강한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惡臭의 취기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賦課金 算定方法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부과금 산정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산정착오로 잘못 계산할 수도 있다. 부과금 부과대상업소에서 산정공식을 알아두면 賦課金額을 算定하여 볼 수 있다. \*

